

■ 마이플랜퇴직연금정기예금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마이플랜퇴직연금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는 이 특약이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퇴직연금감독 규정,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제1조의 2 (용어의 정리)

- ① 이 예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3. “퇴직연금사업자”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 법령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4. “디폴트옵션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로써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5.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지시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2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1. 고정금리형
예금가입일 및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을 만기 시까지 적용
2. 디폴트옵션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 조의3에 따라 시행되는 디폴트옵션제도의 정기예금으로
예금가입일 및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을 만기 시까지 적용

제4조 (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2가지 형태로 구분하며, 중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① 고정금리형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6개월에서 60개월 이내에서 연, 월, 일로 합니다.
- ② 디폴트옵션형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36개월에서 60개월 이내에서 연, 월, 일로 합니다.

제5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합니다.

제6조 (이율의 적용)

- ① 이 예금은 예금가입일 및 매 재예치일을 이율결정일로 하고, 매 이율결정일에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재예치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첫 영업일을 이율결정일로 하며, 재예치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이율결정일로 합니다.
- ② 이 예금의 이자는 만기일에 이율로 셈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 ③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약정한 만기일 전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중도해지이율 산식에 의거 산출된 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조 (특별중도해지)

- ① 제 6 조제 3 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각 호 중 제 1 호부터 제 10 호까지의 사유에 의해 예금주가 중도해지를 할 때에는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의 특별중도해지이율(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이 1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며, 제 11 호와 제 12 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약정이율(가산금리 포함)을 적용합니다.
 1. 가입자의 퇴직급여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4.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6.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7.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8. 가입플랜 변경을 위해 해지하는 경우. 단, 해지와 동시에 해지원리금 이상으로 이 예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9. 사업장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10.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11.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사유 발생 시
 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13조의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 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② 이 예금의 특별중도해지시 적용되는 특별중도해지이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1년 미만 : 이 예금의 6개월제 약정이율
2. 1년 이상 2년 미만 : 이 예금의 1년제 약정이율
3. 2년 이상 3년 미만 : 이 예금의 2년제 약정이율
4. 3년 이상 4년 미만 : 이 예금의 3년제 약정이율
5. 4년 이상 5년 미만 : 이 예금의 4년제 약정이율
6. 5년 : 이 예금의 5년제 약정이율

제8조 (만기후이율)

만기일 후 지급을 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청구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의 만기후이율로 쉼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9조 (재예치)

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1. 이 예금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당초 약정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하여 당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만기일에 자동으로 재예치 됩니다.
2. 재예치 통지를 요청한 고객에 한하여 자동 재예치에 대한 내용을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3. 사용자가 예금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재예치 의사 없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예치 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별도 의사표시에 따라 처분합니다.

②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1.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
2. 디폴트옵션형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

제9조의 2 (재예치 기준일)

이 예금의 만기일을 재예치일로 하고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첫 영업일을 재예치일로 하며, 만기일이 없는 경우 그 달의 말일을 재예치일로 합니다.

제10조(분할해지)

-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2.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3.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
- ③ 고객이 이 예금의 분할해지를 청구할 때에는 예금신규일(재예치일)로부터 분할해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신규일(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씌한 이자를 분할해지금액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1조 (거래제한)

- ① 이 예금은 담보제공, 질권설정, 양수도가 불가하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② 이 예금은 통장을 발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1월 24일 이후 신규계좌에 한하여 적용하며, 기존가입고객에게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월 02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제2(경과규정)

제9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는 자동재예치 됩니다.

※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